



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최봉희
(영등포본동, 신길3동)

구청 조례 폐지 의견 송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폐지 검토

III 검토 사항

-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응급입원이나 행정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, 서울시 「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」 구축되어, 11월부터 가동됨에 따라 서울시·경찰청 차원의 정신응급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조례제정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정신건강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⋮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